

寄 稿 内 規

1. 目 的

이 내규는 大韓建築士協会 会誌(以下 “会誌”라 한다)의 寄稿에 関係되는 事項을 規定함으로서 寄稿活動을 助長 向上시키고, 建築士 業務의 健全한 發展과 讀者の 便利를 도모하며, 아울러 建築文化 發展에 이바지 함을 目的으로 한다.

2. 寄稿者의 資格

寄稿하는 者의 資格은 本協会 会員 및 建築關係 專門家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原稿의 청탁은 本會 編纂委員會에서 정한 編輯計劃에 依한다.

3. 原稿의 接受

原稿는 本協会 出版部에서 接受한다.

4. 原稿의 受理

1) 原稿의 受理는 별도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編纂委員會에서 결정한다.

2) 다음과 같은 原稿는 受理하지 아니한다.

ㄱ) 本協会의 目的에 위배되거나 関係없는 것.

ㄴ) 이미 發表된 것으로서 개재의 意義를喪失하였다고 認定되는 것.

ㄷ) 会誌의 品位를 損傷하는 内容의 것.

ㄹ) 補完이 要求되는 것.

ㅁ) 原稿 作成 規準에 適合하지 아니한 것.

3) 原稿의 受理日은 編纂委員會에서 揭載를 決定한 날로 한다.

5. 原稿 作成의 形式

原稿의 作成은 別途 规定하는 바에 따른다.

6. 連載 回数의 制限

同一人이 寄稿하는 同一 主題의 原稿의 連載 回数는 特別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二回 以内로 한다.

7. 原稿의 返還

일단 接受된 原稿를 揭載하려는 号의 会誌가 出版되기 以前에는 返還하지 아니한다.

8. 原稿의 校正

ㄱ) 原稿의 校正은 印刷 前에 寄稿者가 한다.

다만 寄稿者의 事情에 따라 編纂委員會에서 協助할 수 있다.

ㄴ) 編纂委員會는 別途 规定하는 原稿作成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한 部分에 对하여 校正을 할 수 있다.

9. 稿 料

1) 稿料는 别途 规定하는 바에 따라 寄稿者에게 支拂한다.

2) 다음과 같은 原稿에 对한 稿料는 無料로 할 수 있다.

ㄱ) 請託 原稿가 아닌 것.

ㄴ) 筆者의 請願에 따라 揭載되는 投稿의 原稿.

ㄷ) 이미 다른 機関을 通하여 發表하였거나 다른 機關에 提出된 原稿.

ㄹ) 協会의 公式 記事

3) 必要한 資料에 对하여는 그에 必要한 収集費를 予算의 범위 안에서 支拂할 수 있다.

10. 其 他

이 규정에 없는 事項은 別途 定하는 内規에 따르며, 其他의 것은 一般慣例에 따른다.

原稿作成基準

1. 一般事項

1-1. 原稿의 分類

原稿(번역 원고 포함)는 다음과 같이 分類하고 이를 原稿 表題 위에 表記하여야 한다.

1) 學術 論文

2) 一般 論文

3) 會員 作品

4) 資料(各種 統計, 海外作品 및 海外技術 情報)

5) 會員文芸(詩, 隨筆, 紀行文 等)

6) 協会記事

1-2 原稿의 構成

1) 學術 및 技術 論文은 다음과 같이 構成함을 標準으로 한다.

ㄱ) 要旨(國文 要旨)

ㄴ) 本文
① 序論
② 本論(내용 구분은 그 내용에 상응하게 한다)
③ 結論

ㄷ) 參考文献

2) 一般 論文은 다음과 같이 構成함을 標準으로 한다.

ㄱ) 要旨(國文 要旨)

ㄴ) 本文(내용 구분은 그 내용에 상응하게 한다)

ㄷ) 參考文献

3) 會員文芸의 原稿는 會員에 限하되 編纂委員會에서 추천되는 原稿에 限해서 揭載할 수 있다.

4) 會員作品 寄稿者は 다음과 같은 圖面과 사진을 提出하여야 한다.

ㄱ) 平面図(캔트지 또는 트레이싱 페이퍼에 잉킹한 것)

ㄴ) 配置図(" " ")

ㄷ) 断面図(상세도 포함)

ㄹ) 實建物의 全景 사진과 屋内 사진.

ㅁ) 建築概要(전 찬위 원회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다)

1-3. 原稿字数의 標準

ㄱ) 諸般 原稿의 面数는 200字 原稿紙로 하고, 会誌一面의 枚数는 12枚로 한다.

ㄴ) 揭載되는 原稿는 会誌 8面 以内로 한다. 다만 編纂委員會에서 特別히 必要하다고 認定한 것은 그려하지 아니하다.

1-4. 原稿의 共通 記載 狀況

原稿는 다음 事項을 記載한다.

ㄱ) 表題

ㄴ) 著者名

ㄷ) 著者의 所屬機關 및 職位

ㄹ) 主要目次(간단한 경우에는 생략)

1 - 5. 原稿紙의 規格

- ㄱ) 原稿는 200字 原稿用紙에 作成한다.
- ㄴ) 原稿는 가로쓰기로 하여 띠어쓰기는 高等学校 国定 教科書의 例에 따른다. 外國語 또는 算用 数字는 붙여 쓰며 한 칸에 一字式 쓰지 않해도 된다.

2. 使用語 및 表記

2 - 1. 使用語

使用語는 國語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編纂委員會에서 특별히 外國에 紹介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2. 使用文字

- ㄱ) 國語를 使用하는 것에 대하여는 한글과 漢字를 섞어 쓸 수 있다.
- ㄴ) 한글의 맞춤법은 한글학회의 “한글맞춤법 통일안”(1946)에 따른다.

2 - 3. 外來語의 表記

- ㄱ) 外來語는 한글로 表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글로 表記함으로써 難解한 外來語는 原語 그대로 쓴다.
- ㄴ) 外來語의 表記는 문교부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 방법”(1958) 및 “국정교과서 외래어 일람표”에 따른다.
- ㄷ) 다음 사항은 原語 그대로 쓴다.

- ① 人名
- ② 文獻名
- ㄹ) 本文中 外來語의 表記는 첫머리자는 大文字로 하고 나머지는 小文字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① 고유명사인 경우
 - ② 대문자를 쓰는 약어
 - ③ 특별히 강조하는 경우

2 - 4. 專門用語

- 專門用語는 다음 순위에 따라 統一하여 쓴다.
- ㄱ) 大韓建築学会 制定用語
 - ㄴ) 韓國工業規格에 쓴 用語
 - ㄷ) 文教部 科學技術 用語

2 - 5. 数字 및 数式

- ㄱ) 数字
数量을 표시할 때에는 算用数字(아라비아 数字)를 쓴다.
- ㄴ) 数式
数式은 줄(행)을 바꾸지 않고 1행으로 씀을 원칙으로 한다.

3. 單位 및 記号

3 - 1. 單位

- ㄱ) 모든 단위는 미터법으로 統一함을 원칙으로 한다.
- ㄴ) 前項 以外의 必要한 관용 단위에 대하여는 그대로 쓰되 팔호 속에 주기 한다.

(例) : 케인트 1통(20l)

시엔트 1포대 (40kg)

3 - 2. 記号

数学記号는 KS A 0101(수학기호)

單位記号는 KS A0102(단위기호)의 규정에 의한다.

4. 그림, 사진 및 표

4 - 1. 그림

ㄱ) 그림의 작성

- ① 그림은 순백의 캔트지 또는 트레이싱 페이퍼에 먹 또는 검정잉크로 제도하되, 문자 기입은 모두 연필로 임시 기입한다.

- ② 그림 및 도표의 크기는 가급적 인쇄 크기의 1.5배 ~ 2.0배(선 확대율)로 확대한 크기로 정한다.

- ③ 그림의 제도 중 KS F 1501 건축제도(통치)에 규정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른다.

④ 그림의 첨부 방법

모든 그림은 그 그림의 번호를 연필로 기입하되 원고의 본문 중에 삽입될 자리에는 1행을 비우고 그 그림의 번호와 表題(또는 설명)를 기재한다. (例: 그림 1. 에너지 감소에 대한 반침대의 방진 효과)

4 - 2. 寫眞

ㄱ) 사진의 製作

모든 원고의 사진은 설명하게 印刷될 수 있는 것을 첨부한다.

ㄴ) 사진 첨부 方法

모든 사진은 그 사진의 번호를 연필로 기입하여 원고의 本文 中에 삽입될 자리에는 1행을 비우고 그 그림의 번호와 表題(또는 설명)를 記載한다.

4 - 3. 表

- ㄱ) 表는 本文 原稿紙에 직접 記載하거나 別表에 作成하여 제 자리에 붙인다.

- ㄴ) 모든 表의 상부에는 그 表의 번호를 붙이고 반드시 表題(또는 설명)를 記載한다.

(例: 表1. 公共住宅 年度別 現況表)

- ㄷ) 表 中의 註記는 그 表의 바로 밑에 記載한다.

5. 參考文獻의 記載方法

参考 文獻의 記載는 그 원고의 本文 뒤에 일괄 記載한다.

寄稿의 受理

1. 本協會 出版部에 接受된 원고는 그 掲載 如否를 編纂委員會에서 決定하되 違背如否를 檢討하기 위하여 各 編纂委員에게 按配하여 決定할 수 있다.
2. 原稿의 送達을 받은 編纂委員은 寄稿 内規에 對한 違背 如否를 檢討한 후 受理 可否에 관한 所見을 붙여 還送한다.
다만, 그 所見이 否일 때에는 再次 이 節次를 反復할 수 있다.
3. 編纂委員長은 前條의 결과를 綜合하여 編纂委員 會議에서 受理 如否를 議決한다.